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1일, 서미화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 의원)

현행법은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

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학대의심 신고 사례 3,03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97건(26.3%)로 전년(802건) 대비 0.6% 감소하였음을 고려하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과태료 상한의 인상이 곧바로 신고의무 이행을 제고로 이어질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아동학대·노인학대 등 유사한 신고의무 제도와 비교할 때 과태료 금액 수준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 요건의 차이까지 함께 고려하여 형평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노인복지법」의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 시 각각 10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의4를 삭제한다.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90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u>
2.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략) 3의4. <u>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 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 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 복무요원은 제외한다.</u> 3의5. ~ 7. (생 략) ④ (생 략)	3의5.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